

# 신탁계약서 변경 대비표

집합투자기구 명칭 : KTB 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제 1 호[주식혼합]

정정 전	정정 후
<p><b>투자신탁 명칭 :</b> KTB 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 [주식혼합]</p>	<p><b>투자신탁 명칭 :</b> KTB 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제 1 호 [주식혼합]</p>
<p><b>제 2 조(용어의 정의)</b> 이 신탁계약에서 ... 바에 의한다. 1.~7.&lt;생략&gt; &lt;신설&gt;</p>	<p><b>제 2 조(용어의 정의)</b> 이 신탁계약에서 ... 바에 의한다. 1.~7.&lt;현행과 같음&gt; 8. “ 모자형 ” 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(이하 “ 모집합투자기구 ” 라 한다)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(이하 “ 자집합투자기구 ” 라 한다)를 말한다.</p>
<p><b>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 ①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“<u>KTB 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</u>”으로 한다. ②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다. 1.~5.&lt;생략&gt; &lt;신설&gt; ③ &lt;생략&gt; &lt;신설&gt;  &lt;신설&gt;</p>	<p><b>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 ①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“ <u>KTB 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제 1 호[주식혼합]</u>”으로 한다. ②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다. 1.~5.&lt;현행과 같음&gt; 6. 모자형 ③&lt;현행과 같음&gt;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KTB 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 ⑤집합투자업자는 제 4 항 각호 이외의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3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
<p><b>제 16 조(투자목적)</b> 이 투자신탁은 <u>국내주식 및 국내채권</u>을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 16 조(투자목적)</b> 이 투자신탁은 <u>국내주식 및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</u>을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<b>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<u>지분증권(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) 및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이하 “ 주식 ” 이라 한다)</u> 2. <u>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</u></p>	<p><b>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<u>제 3 조제 4 항 각 호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</u>  &lt;삭제&gt;</p>

<p>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3. <u>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“자산유동화증권”이라 한다)</u></p> <p>4. <u>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이어야 한다. 이하 “어음등”이라 한다)</u></p> <p>5. <u>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이나 주식·채권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지수 등에 연계된 것(이하 “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”이라 한다)</u></p> <p>6. <u>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집합투자증권등”이라 한다)</u></p> <p>7. <u>환매조건부매도</u></p> <p>8. <u>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</u></p> <p>9. <u>증권의 차입</u></p> <p>10. <u>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</u></p> <p>②&lt;생략&gt;</p>	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2. <u>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</u></p> <p>②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<b>제 18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<u>주식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 이하로 한다.</u></p> <p>2. <u>채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 이하로 한다.</u></p> <p>3. <u>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</u></p>	<p><b>제 18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<u>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p>2. <u>제 17 조제 2 항 각 호 방법으로서의 운용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다만, 제 26 조 및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&lt;삭제&gt;</p>

<p>4. <u>어음등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</u></p> <p>5. <u>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u></p> <p>5 의 2. <u>주식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 1 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 <p>6. <u>환매조건부매도는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</u></p> <p>7. <u>과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 이하로 한다.</u></p> <p>8. <u>증권의 대여는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</u></p> <p>9. <u>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외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</u></p>	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
<p><b>제 19 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b>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...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&lt;생략&gt;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(債權)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<u>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u></p> <p>나. <u>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),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시행령</u></p>	<p><b>제 19 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b>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...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

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

- 다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.
- 3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- 4.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- 5.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- 6.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- 가.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p>나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다.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라.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1 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7. 법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</p> <p>8.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	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
<p><b>제 20 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b></p> <p>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...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~ 4.&lt;생략&gt;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5 호 내지 제 9 호,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5 호, 동조제 6 호다목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</p> <p>2. 이 투자신탁의 일부해지</p> <p>3.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</p> <p>4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</p> <p>5.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</p> <p>③제 18 조제 7 호, 제 19 조제 2 호본문, 제 4 호 및</p>	<p><b>제 20 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b></p> <p>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...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~ 4.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

<p>제 5 호의 규정은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<u>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 17 조제 1 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 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</u>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&lt;본조 신설&gt;</p>	<p><b>제 25 조의 2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)</b>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.</p>
<p>&lt;본조 신설&gt;</p>	<p><b>제 26 조의 2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)</b>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를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이 보유 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
<p><b>제 27 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b></p> <p>①~③&lt;생략&gt;</p> <p><u>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자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<b>제 27 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b></p> <p>①~③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자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<u>다만,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<p><b>제 28 조(환매연기)</b> ①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(신탁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<u>사유로</u>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…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⑦&lt;생략&gt;</p>	<p><b>제 28 조(환매연기)</b> ①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(신탁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<u>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</u>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… 제 25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⑦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<b>제 30 조(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고)</b></p> <p>①&lt;생략&gt;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[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]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,000 원으로 공고</p>	<p><b>제 30 조(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고)</b></p> <p>①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<u>(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포함한다)</u>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[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]의 기준가격은 1 좌를</p>

<p>한다. ③&lt;생략&gt;</p>	<p>1 원으로 하여 1,000 원으로 공고 한다. ③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<b>제 35 조(상환금 등의 지급)</b> ①&lt;생략&gt;②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③&lt;생략&gt;</p>	<p><b>제 35 조(상환금 등의 지급)</b> ①&lt;현행과 같음&gt; ②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<u>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</u>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③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<b>제 37 조(수익자총회)</b>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.  ②~⑨&lt;생략&gt; <u>&lt;신설&gt;</u>  ⑩&lt;생략&gt;</p>	<p><b>제 37 조(수익자총회)</b>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신탁계약 <u>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</u> 결의할 수 있다. ②~⑨&lt;현행과 같음&gt; <u>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/u> ⑪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<b>제 43 조(신탁계약의 변경)</b> ①~③&lt;생략&gt; ④수익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...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<b>제 43 조(신탁계약의 변경)</b> ①~③&lt;현행과 같음&gt; ④수익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<u>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</u>)부터 1 월 이내 ...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<b>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 ①&lt;생략&gt;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 1.~5. &lt;생략&gt; ③ 및 ④&lt;생략&gt; ⑤집합투자업자는 ...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1. 및 2. &lt;생략&gt; ⑥신탁업자는 ... 규정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p>	<p><b>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 ①&lt;현행과 같음&gt;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<u>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</u>)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 1.~5.&lt;현행과 같음&gt; ③ 및 ④&lt;현행과 같음&gt; ⑤집합투자업자는 ... 자산운용보고서(<u>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한다</u>)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1. 및 2.&lt;현행과 같음&gt; ⑥신탁업자는 ... 규정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(<u>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한다</u>)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</p>

<p>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⑦~⑩&lt;생략&gt;</p>	<p>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⑦~⑩&lt;현행과 같음&gt;</p>
<p><b>제 51 조(손해배상책임)</b> ①&lt;생략&gt;</p> <p>②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·일반사무관리회사·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(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) 및 ……손해배상책임을 진다.</p>	<p><b>제 51 조(손해배상책임)</b> ①&lt;현행과 같음 &gt;</p> <p>②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<u>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</u>·일반사무관리회사·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(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) 및 …..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</p>